|  |  |  |
| --- | --- | --- |
| **환경보호 주관부서**  **생산제한·휴업정돈 실시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30호  <환경보호 주관부서 생산제한·휴업정돈 실시방법>이 2014년 12월 15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저우성시옌(周生賢)  2014년 12월 19일  **제1장 총칙**  **제1조** 생산제한·휴업정돈 조치의 실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위반한 기업, 사업조직 및 기타 생산경영자(이하 "오염배출자"로 약칭)에 대해 생산제한, 휴업정돈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휴업 정돈 결정을 내림에 있어 오염배출자에게 시정 또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 휴업정돈을 실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생산제한· 휴업정돈 결정, 생산제한 기간 연장상황 및 생산제한·휴업정돈 해제일자 등 관련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장 적용 범위**  **제5조** 오염배출자가 오염물질 배출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질 일간 최고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오염 배출자에게 생산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당 오염 배출자에게 휴업정돈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관, 침투정(井), 침투갱(坑), 주입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변조, 조작 또는 오염방지·퇴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감독·관리 기피의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중금속,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이 들어있는 등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인체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 기준의 3배 이상 배출한 경우;  (3) 오염물질 배출량이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연간 통제지표를 초과한 겨우;  (4) 생산제한을 명령받은 후에도 여전히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5) 돌발사건으로 배출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6)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오염배출자가 오염물질 배출기준 또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환경보호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휴업정돈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농 오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업체;  (2) 생산경영 업무가 기본 민생, 공공이익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3) 휴업정돈의 실시가 생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제8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해당 오염배출 자에게 휴업, 폐업을 명령할 수 있다.  (1) 2년 내에 중금속, 지속성 유기오염 물질이 들어있는 등 유독물질 배출기준 위반으로 2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았고 위의 행위를 다시 실시한 경우;  (2) 휴업정돈을 명령받은 후 생산중지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생산을 회복한 경우;  (3) 휴업정돈 결정이 해제된 후 추적검사에서 동일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률·법규에 규정한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환경법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제3장 실시 절차**  **제9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휴업 정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  생산제한·휴업정돈 명령의 증거에는 현장검사기록, 조사신문기록,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시청자료, 증인의 증언 및 기타 증명 재료를 포함한다.  **제10조**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환경보호 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건이 중대하거나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심사위원회가 공동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을 내리기 전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사실, 근거 및 당사자가 법에 의거하여 보유하는 진술, 해명의 권리 또는 공청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오염배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동일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릴 시 행정처벌 사전고지서 또는 행정처벌 공청 고지서에서 일괄고지해야 한다.  **제12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휴 업정돈 결정을 내릴 시 생산제한 명령 결정서 또는 휴업정돈 명령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정처벌 결정서에 기재할 수도 있다.  **제13조** 생산제한 명령 결정서와 휴업정돈 명령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오염배출자의 명칭 또는 성명, 영업 집조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조직기구코드, 주소지,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등 기본정보;  (2) 위법사실, 증거와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을 내린 근거;  (3) 명령하는 생산제한·휴업정돈의 시정 방식과 기한;  (4) 오염배출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 및 행정재심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방식과 기한;  (5)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명칭, 날인과 결정일자.  **제14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생산제한·휴업 정돈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해당 결정서를 오염배출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5조** 생산제한은 보통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본급 환경보호 주관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휴업정돈의 기한은 휴업정돈 명령 결정 서가 오염배출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휴업정돈 결정 해제일까지로 한다.  **제16조** 오염배출자는 생산제한 명령 결정서 또는 휴업정돈 명령 결정서를 수령한 후 즉시 정돈·개선해야 하고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정돈·개선방안을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및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정돈·개선방안에는 시정조치, 공사 진도, 자금 보장 및 담당인원 등 사항이 확정되어야 한다.  생산제한을 명령받은 오염배출자는 정돈·개선 기간 중에 오염물질 배출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질 일간 최고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모니터링 기술규범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거나 조건을 구비한 환경보호 모니터링 기구에 위탁하여 환경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오염배출자는 정돈·개선 임무를 완성한 후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정돈·개선 임무 완성 상황과 정돈·개선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보고 및 비안(備案)해야 하며 모니터링 보고서 및 정돈·개선 기간 생산에 사용된 전기 소모량, 급수 소모량, 주요제품의 생산량 및 정돈·개선 전과의 대비 상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은 오염배출자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비안(備案)한 날에 해제된다.  **제18조** 오염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제한·휴업정돈 결정은 자동 종료된다.  (1) 오염배출자가 법에 따른 취소, 해산, 파산 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로 부터 법에 따라 휴업, 폐업을 명령받은 경우.  **제19조** 오염배출자가 생산제한, 휴업정 돈을 명령받은 후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배출자의 생산제한·휴업정돈 조치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감찰을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 또는 처벌해야 한다.  **제20조** 오염배출자에 대한 생산제한·휴업 정돈이 해제된 후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제일로부터 30일 내에 오염배출자에 대한 추적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4장 부칙**  **제21조** 이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2조** 이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  **生产、停产整治办法**  环境保护部令第30号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已于2014年12月15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月1日起施行。  部长 周生贤  2014年12月19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措施，依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制定本办法。  **第二条** 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对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下称排污者），责令采取限制生产、停产整治措施的，适用本办法。  **第三条** 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时，应当责令排污者改正或者限期改正违法行为，并依法实施行政处罚。  **第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的，应当依法向社会公开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限制生产延期情况和解除限制生产、停产整治的日期等相关信息。  **第二章 适用范围**  **第五条** 排污者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日最高允许排放总量控制指标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责令其采取限制生产措施。  **第六条** 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责令其采取停产整治措施:  　　（一）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污染物，超过污染物排放标准的；  　　（二）非法排放含重金属、持久性有机污染物等严重危害环境、损害人体健康的污染物超过污染物排放标准三倍以上的；  　　（三）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年度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  　　（四） 被责令限制生产后仍然超过污染物排放标准排放污染物的；  　　（五）因突发事件造成污染物排放超过排放标准或者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  　　（六）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七条** 具备下列情形之一的排污者，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有关环境保护法律法规予以处罚，可以不予实施停产整治：  　　（一）城镇污水处理、垃圾处理、危险废物处置等公共设施的运营单位；  　　（二）生产经营业务涉及基本民生、公共利益的；  　　（三）实施停产整治可能影响生产安全的。  **第八条** 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由环境保护主管部门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责令停业、关闭：  　　（一）两年内因排放含重金属、持久性有机污染物等有毒物质超过污染物排放标准受过两次以上行政处罚，又实施前列行为的；  　　（二）被责令停产整治后拒不停产或者擅自恢复生产的；  　　（三）停产整治决定解除后，跟踪检查发现又实施同一违法行为的；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严重环境违法情节的。  **第三章 实施程序**  **第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在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前，应当做好调查取证工作。  　　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的证据包括现场检查笔录、调查询问笔录、环境监测报告、视听资料、证人证言和其他证明材料。  **第十条** 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前，应当书面报经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批准；案情重大或者社会影响较大的，应当经环境保护主管部门案件审查委员会集体审议决定。  **第十一条** 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前，应当告知排污者有关事实、依据及其依法享有的陈述、申辩或者要求举行听证的权利；就同一违法行为进行行政处罚的，可以在行政处罚事先告知书或者行政处罚听证告知书中一并告知。  **第十二条** 环境保护主管部门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的，应当制作责令限制生产决定书或者责令停产整治决定书，也可以在行政处罚决定书中载明。  **第十三条** 责令限制生产决定书和责令停产整治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排污者的基本情况，包括名称或者姓名、营业执照号码或者居民身份证号码、组织机构代码、地址以及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姓名等；  　　（二）违法事实、证据，以及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的依据；  　　（三）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的改正方式、期限；  　　（四）排污者应当履行的相关义务及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五）环境保护主管部门的名称、印章和决定日期。  **第十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自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之日起七个工作日内将决定书送达排污者。  **第十五条** 限制生产一般不超过三个月；情况复杂的，经本级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人批准，可以延长，但延长期限不得超过三个月。  　　停产整治的期限，自责令停产整治决定书送达排污者之日起，至停产整治决定解除之日止。  **第十六条** 排污者应当在收到责令限制生产决定书或者责令停产整治决定书后立即整改，并在十五个工作日内将整改方案报作出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并向社会公开。整改方案应当确定改正措施、工程进度、资金保障和责任人员等事项。  　　被限制生产的排污者在整改期间，不得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重点污染物日最高允许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并按照环境监测技术规范进行监测或者委托有条件的环境监测机构开展监测，保存监测记录。  **第十七条** 排污者完成整改任务的，应当在十五个工作日内将整改任务完成情况和整改信息社会公开情况，报作出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的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并提交监测报告以及整改期间生产用电量、用水量、主要产品产量与整改前的对比情况等材料。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自排污者报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之日起解除。  **第十八条** 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限制生产、停产整治决定自行终止：  　　（一）依法被撤销、解散、宣告破产或者因其他原因终止营业的；  　　（二）被有批准权的人民政府依法责令停业、关闭的。  **第十九条** 排污者被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后，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按照相关规定对排污者履行限制生产、停产整治措施的情况实施后督察，并依法进行处理或者处罚。  **第二十条** 排污者解除限制生产、停产整治后，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解除之日起三十日内对排污者进行跟踪检查。  **第四章 附 则**  **第二十一条** 本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15年1月1日起施行。 |